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7
----------	-----

2018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8년 10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라. 상정결과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12월 1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가. 제안이유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세계유산 등재 관련 민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인정(안 제4조제2항)
- (2) 서울특별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
-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
- (3) 기 타 :
 - ①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② 입법예고(2018. 8. 2. ~ 8. 22.) 결과: 의견없음
 - ③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안은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이 관리하는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②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여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은 2017년 3월 10일 한양도성에 대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불가 판정에 따라 3월 13일 등재 신청을 철회 하였음.

당시 이코모스는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¹⁾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²⁾을 내었으며, 특히 ‘한양도성이 행정적으로 관리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전통으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 하였음.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요건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유산의 완전성 및 진정성 충족 여부,

유산의 보호관리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

2) 문화재청은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③살아있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특출한 증거’, ‘④인류 역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유형의 건물, 기술의 총체, 경관의 뛰어난 사례’, ‘⑤특정문화를 표현하는 전통적 인간 정주지, 육지·바다의 사용 사례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 3가지를 제출하였으나 이코모스로부터 모두 인정받지 못했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세부기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를 포함한 전 인류에 있어 공통적으로 문화 및 자연적 중요성을 갖는 것”

- ①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Master Piece)을 대표해야 한다.
- ②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 ③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 ④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 ⑤ 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⑥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이코모스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및 전문가 대책 회의를 통해 등재신청 철회는 잠정목록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재신청 시 장애요소가 없다고 보고 향후 재도전하면 등재가능성이 클 것³⁾이라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코모스의 관점에서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취약점 분석과 방향을 설정하여 등재 가능성을 제고하고, 2019년 1월 등재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였음.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불가 판정으로 신청을 철회하고 최종적으로 등재된 사례

유산명	국가명	철회연도	등재연도
Lena Pillars Nature Park	러시아	2009	2012
History City of Jeddah	사우디아라비아	2011	2014
Chavet-pont D'Arc cave	프랑스	2012	2014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서울시 문화본부는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교류·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한양도성 교류·홍보 T/F’를 구성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국내외 교류 활동 확대 및 다각적인 홍보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한양도성도감은 민간 전문가 등에 대한 지원과 활용이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홍보대사 위촉의 경우로만 가능해 지원근거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또한, 동 개정안 제출 결정에 따라 2017년 10월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권고한 서울시정위원회의 양성평등 참여 보장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여 최종 제출하였음.

- 안 제4조제2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10분의 6 초과 금지 사항을 명기한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2016년 7월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중의 하나로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 계획(2017.10)”을 수립하여 서울시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위원회 신규 설치 및 기존조례 내용 수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는 내용을 삽입할 것을 권고하였음.

동 개정안의 내용도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위원회 관리 체계에 따라 조례 개정 시 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 안 제9조제4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학술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 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인데,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은 그동안 동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세계유산위원회, 해외 학술회의 등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 활동의 지원을 해 온 바 있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2016년 및 2017년 서울시에서 지원한 민간 전문가의 한양도성 관련 해외 활동⁴⁾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에서 명기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향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양도성도감은 17개의 타 지자체 등에도 민간 지원의 근거 사례가 많다는 사유로 동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학술단체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한 지원을 관련 조례에 명기한 사례는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가 유일함.

타 지자체의 조례 비교

□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업 및 위탁) ① 시장은 시유산을 세계유산등에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유산등에 등재를 추진하는 시유산의 홍보 사업
2.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및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업
3.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유산 보유 지역주민에 대한 보존·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학술강좌 개설 사업
4. 국내외 세계유산등의 등재 지역 및 관리단체와의 교류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2016년 7월 13일~21일 :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을 위해 민간 전문가(송인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1인 경비 지급(207만 2870원)

2017년 4월 26일~5월 1일 : 유네스코 자문기구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민간 전문가(이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1인 경비 지급(491만 1,780원)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와 등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경비 보조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7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을 등재·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경비 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3년 12월 17일 제25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는데,

상기 조례안 제3조는 명예부시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국내·외 활동을 명시하고, 안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임무를 수행할 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라는 명예부시장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으며, 이 조례안의 부결 이후 집행부가 새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 표와 같이 현재 운영 중임.

「서울특별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임무) 명예부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제9조(예우 및 수당 등) ② 명예부시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임무)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정에서의 참여
3.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
4. 그 밖에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나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교류 및 홍보는 국제적인 활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술단체 및 민간 전문가의 한양도성 관련 활동이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교류·홍보 계획(2018.7)”에서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2017년 3월 등재 철회 당시 계획했던 ‘2020년 7월 확정 완료’를 ‘2022년 7월 확정’으로 수정하였음.

이에 따라 2019년에는 “한양도성 학술회의” 사업이 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학술단체 및 민간 전문가의 해외교류 활동 지원은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 집행한 바 향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안 제4조제3항,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9조제2항 제6호 및 제3항, 안 제12조제2항의 개정은 단순 자구 등에 대한 수정으로 특별한 사안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
----------	-----

제출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세계유산등재 관련 민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촉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인정 (안 제4조제2항)
- 나. 서울특별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8. 2. ~ 8. 22.)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u>서울시</u>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p>	<p>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행정(1)부시장 ----- ----- ----- ----- ----- ----- <u>서울특별시</u> ----- ----- -----.</p>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생략)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② ----- ----- <u>따른</u> ----- ----- <u>따른</u> ----- -----.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③ ----- ----- <u>따른</u> ----- -----.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생략)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기타</u>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u>그 밖에</u>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 <u>따른</u> ----- ----- ----- -----.

현행	개정안
<p data-bbox="252 275 422 315"><신설></p> <p data-bbox="215 674 786 716">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p> <p data-bbox="252 808 786 1052">② 제1항에 의한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 data-bbox="852 275 1386 651">④ 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data-bbox="815 674 1386 784">제12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52 808 1386 1115">② ----- 따른 ----- ----- ----- ----- -.</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도성정책팀 엄기갑(2133-2653)